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** (□1세대 1주택자, □1세대 무주택자) | | | | | | | | | | | |
| ※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| | | | | | | | | (앞쪽) | | |
|  | | | | | | | | | | | |
| **신청인**  **(공제 대상자)** |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| | | | | | | | |
| 신청·접수 결과 회신방법 □SMS □알림톡 □우편  ※ 미체크 시 알림톡으로 전송 | | (휴대)전화번호 | | | | | | | | |
|  | | | | | | | | | | | |
| **대리인** | **※ 대리인을 통한 신청서 접수는 내방 시에만 가능** | | | | | | | | | | |
| 대리인 성명 | 대리인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| (휴대)전화번호 | | | | | | | | 신청인과의 관계 |
|  | | | | | | | | | | | |
| **대출**  **정보**  **(1)** | **‣ 대출자가 신청인 본인인 경우 대출자 성명, 대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가능**  **‣ 공제 신청 대상인 주택 구입․임차 관련 대출 정보만 기입**  **‣ 대출자가 여럿인 경우 본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배우자·직계존비속만 대출자로 인정** | | | | | | | | | | |
| 대출인원 □1명 □( )명 | 신청인과의 관계 □본인 □배우자 □자녀 □부 □모 □(외/증)조부 □(외/증)조모 □(외/증)손자 | | | | | | | | | |
| 대출자 성명 | 대출자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| | 대출자 (휴대)전화번호 | | | | | | | |
| 대출 대상 물건지 주소 | | 대출기관명 | | | | | 대출상품명 | | | |
| 대출시작일 | 년 월 일 | 대출종료일 | | | | 년 월 일 | | | | |
| 대출금액 | 원 |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 기준 대출잔액 | | | | 원 | | | | |
| **위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** | | | | 성명 | (서명 또는 인) | | | | | |
|  | | | | | | | | | | | |
| **대출**  **정보**  **(2)** | 대출인원 □1명 □( )명 | 신청인과의 관계 □본인 □배우자 □자녀 □부 □모 □(외/증)조부 □(외/증)조모 □(외/증)손자 | | | | | | | | | |
| 대출자 성명 | 대출자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| | 대출자 (휴대)전화번호 | | | | | | | |
| 대출 대상 물건지 주소 | | 대출기관명 | | | | | 대출상품명 | | | |
| 대출시작일 | 년 월 일 | 대출종료일 | | | | 년 월 일 | | | | |
| 대출금액 | 원 |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 기준 대출잔액 | | | | 원 | | | | |
| **위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** | | | | 성명 | (서명 또는 인) | | | | | |
|  | | | | | | | | | | | |
| **대출**  **정보**  **(3)** | 대출인원 □1명 □( )명 | 신청인과의 관계 □본인 □배우자 □자녀 □부 □모 □(외/증)조부 □(외/증)조모 □(외/증)손자 | | | | | | | | | |
| 대출자 성명 | 대출자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| | 대출자 (휴대)전화번호 | | | | | | | |
| 대출 대상 물건지 주소 | | 대출기관명 | | | | | 대출상품명 | | | |
| 대출시작일 | 년 월 일 | 대출종료일 | | | | 년 월 일 | | | | |
| 대출금액 | 원 |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 기준 대출잔액 | | | | 원 | | | | |
| **위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** | | | | 성명 | (서명 또는 인) | | | | | |
|  | | | | | | | | | | | |
|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,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
| 위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20 년 월 일 | | | | | | | | | | | |
| 신청인 | | | | | | | | | | (서명 또는 인) | |
| 대리인 | | | | | | | | | | (서명 또는 인) |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○○○지사장 귀하 | | | | | | | | | | | |
| **(뒤쪽)** | | | | | | | | | | | |
| **첨부서류** | | | | | | | | | | | |
| **1.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…**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서식자료실 및 지사 비치  **2. 신청인 및 대리인 구비서류**  (본인 신청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 (대리인 신청) 위임장, 신청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  (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신청 시)  • 재외국민: 신분증  • 외국인: 신분증 (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운전면허증)  **3. 1세대1주택자(무주택자) 확인 서류(발급일자가 1개월 이내인 서류만 인정)**  • 1세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및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•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(사본)   |  | | --- | | < 재외국민∙외국인 >  피부양자 등재 기준에 준하는 서류를 비동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징구 |   **4. 대출정보 확인 서류**  •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: 금융회사 직인이 찍힌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,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  **※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**  **※ 금융회사 별 서식의 상세항목이 상이하므로 발급서류에 대출잔액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**  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[한국신용정보원(credit4u.or.kr) → 내 신용정보열람 →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]  **4-1. 제3금융권(대부업) 추가서류**  •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(입금자명, 입금금액, 입금일자 기재되어 있어야 함) 등  ※ 발급 금융회사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 **※ 단, 대출금이 매도인(임대인)계좌로 바로 입금된 경우, 해당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매도인(임대인)의 거래내역명세서 제출**  **5.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용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 시 (제3금융권은 정보연계 불가)**  • 신청인뿐만 아니라 대출정보란에 기재된 **대출자 모두의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** 필요   |  | | --- | | **한국신용정보원 정보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서류** | | 대출잔액 확인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, 대출상환내역서), 본인신용정보조회서, 주택금융부채 변동 내역 신고서 | |  | | | | | | | | | | | | |
| **유의사항** | | | | | | | | | | | |
| 1. 제출하신 신청서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업무에 활용되고 상황에 따라 공제 적용 후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인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 2.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 취득일자 또는 전입일자 중 빠른 날과 대출일자의 차이가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, 주택임차의 경우 전입일과 대출일자의 차이가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.  예) 1. 4월 14일의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 7월 14일  2. 11월 30일의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 2월 28일(윤년인 해는 29일)  3. 11월 29일의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 2월 28일(윤년인 해는 29일)  ※ 3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까지  4.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과 보증금 + (월세×40)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임차로 제한됩니다.  5. 신청한 내용과 사실이 다름이 확인된 경우 공제받은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.  6. 매년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해당 연도 11월1일 기준의 대출잔액을 「주택금융부채 변동 내역 신고서」제출로써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보험료 공제가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보험료 공제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